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04

발의연월일: 2020. 11. 5.

발 의 자:이형석·윤후덕·양기대

이병훈 • 민형배 • 권칠승

문진석 • 이용빈 • 조오섭

박 정・김민기・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선거임. 반면, 전국 1,300여개의 금고에서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금고와 중앙회에서 선거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련 기준·절차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됨. 또한 선거사무 위탁 시에도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항은 적용받지 않아 선관위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 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하여 그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법적 통제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회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2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를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를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로,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로, "조합운영"을 "조합 또는 금고운영"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을 "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

사장·중앙회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중앙회"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라 한다"를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라 한다"를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장선거"를 "조합장선거 등"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
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제24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 사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 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u>중앙회 및</u>	<u>중앙회, 「산</u>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	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u>히</u> <u>ㅂ</u>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
	른 금고와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나
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u>금고와 중앙회</u>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	
원회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
방법) ①·② (생 략)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	(3)

- 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 건: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 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및 「수산 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1.	
	<u>조합장선거</u>
	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5항제3호에 따라 회원의 투
	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
	<u>거</u>
2.	
	<u>조합장선거와</u>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
	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선
	출하는 이사장선거
3.	
	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
	금고법

선출하는 <u>조합장선거</u>: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 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 거에 한정한다)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제2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 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 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 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 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 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 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 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 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 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 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 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 하여야 한다.

조합장선거와 「새마을
금고법」 제18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u>선거ㆍ이사장선거</u>
조합 또는 금고운영
•

- ② ~ ⑤ (생 략)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 ⑤ 「농업협동조합법」,「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 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 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 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 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 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 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 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
금품 제공제한)
<u>「산</u>
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u>· 중앙회</u>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 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① 동 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투표 및 개표에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신설>

- 1.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u>조</u> 합장선거에서는 제15조·제1 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선거 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 부"로 본다. 다만, 제15조제3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6.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 원회는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재선거, 보궐선 거,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u>조</u>
합장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총회나 대의
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
합장선거 등"이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에 관한 경우로 한
 정한다.
1
 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
2. ~ 6. (현행과 같음)
2
조합장선거 등